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추위 쟁점학술대회

“동학농민전쟁에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체제구상은
무엇인가?”

일시: 1992년 10월 31일 오후 2시

장소: 대우학술재단빌딩 18층 강연실

주최: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추위

후원: 여강출판사

여강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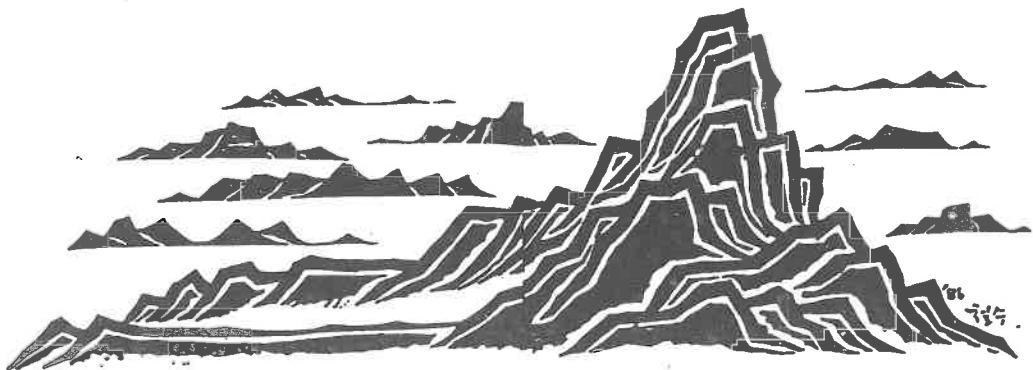
『 동학농민전쟁을 백주위와 함께 여강과 더불어 』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모든 출간물은 여강출판사에서 발간됩니다.

최근 백주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엮은 책으로는 1991년 11월에 발행한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이다. 이 책에서는 1945년 이전의 기록인 15건의 논문·史料·잡지에서 발췌한 글을 성격에 따라, 제1부 한국인에 의한 연구, 2부 일본인에 의한 연구, 3부 동학사상연구, 제4부 동학교단 및 읍지의 기록, 제5부 잡지를 통한 연구로 대별하여 엮었다. 이 책에 이어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2)』가 나올 예정이다.

백주위에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적지를 따라 연 2회 대중역사기행을 다녀온다. 史料를 통한 선생님들의 연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답사 그리고 그 결과를 총평가하여 일반인을 위한 『동학농민전쟁 역사기행 안내서』가 곧 나온다.

동학농민전쟁이 우리역사상 차지하는 민중운동의 위상은 대단히 커다란 것이다. 그런데 민중운동의 역사적 위치에 비해 당대의 기록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산발적인 자료를 하나로 모아 후학들에게 사료수집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농민전쟁을 다년간 연구하신 선생님들께서 『동학농민전쟁사료집성(전 20책)』을 작업진행 중이다.





농민군의 모습.
 머리에는
 색깔있는 띠를 두르고
 벼옷을 입었다.
 어깨에는 횡성총을 둘러메고
 허리에는 火繩을 찼다.

알·림·터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은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불타올라 봉건적 질서의 뿌리를 뒤흔든 커다란 민중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민족·민중운동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농민군의 불씨가 이어져 역사를 위해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농민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역사인식의 대중화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백추위)에서는 민중운동의 전통을 재확인하고자 학술활동과 대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규모있게 수행하는 데는 재정적인 문제가 관건입니다. '백추위'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백추위에 연락을 주시고 회비를 내시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는 분께서는 '백추위'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자료집과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안내

1. 학술활동 : 연구자료집 발간, 논문집 발간, 사료집 발간, 연구발표회 및 연구답사, 사료번역 등
2. 대중사업 : 대중강좌, 역사기행, 역사기행 안내책자, 문예창작 지원, 독후감모집 및 백일장, 전시회, TV드라마 지원사업 등

☐ 후원회비는 아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68-01-0363-570 예금주 : 백추위
 제일은행 107-10-104948 예금주 : 백추위
 한일은행 050-110328-01-401 예금주 : 백추위
 ☎ 277-0583, 277-4622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추위 쟁점학술대회

“동학농민전쟁에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체제구상은
무엇인가?”

일시: 1992년 10월 31일 오후 2시
장소: 대우학술재단빌딩 18층 강연실
주최: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추위
후원: 여강출판사

“동학농민전쟁에 드러난 정치·사회·경제적 체제구상은 무엇인가?”

* 발제·토론참가자

사회 안병욱(성심여대 국사학과)

발제 1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갑오농민전쟁기 집강소의 역사적 성격」

발제 2 조민(고려대 정외과)
「주도세력의 정치적 구상과 이념적 지향」

토론 신용하(서울대 사회학과)
구양근(성신여대 중문과)
고석규(한국역사연구회)
박찬승(목포대 사학과)
김양식(구로역사연구회)

*** 토론진행 순서**

14:00~15:00 정진상 발표
조민 발표

15:00~15:10 중간휴식

15:10~17:30 본토론

17:30~18:00 방청석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질의 토론

18:10~ 회식

인사 말씀

1994년은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농민전쟁의 과학적인 연구 및 역사인식의 대중화를 위해 1989년 9월에 동학농민전쟁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백추위는 크게 학술활동과 대중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활동으로는 논문집 발간, 연구자료집, 사료번역, 사료영인,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중사업으로는 연 2회 일반인을 위한 대중역사기행을 실시하고 『대중역사기행안내서』가 현재 인쇄중이며 대중역사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894년의 일대사건이 시간상으로 백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역사인식이 이런 시간에 걸맞게 제고되어 있는가? 우리 연구소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990년 농민전쟁의 학술적 성격규명을 위해 용어토론회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학자들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농민집강소의 역사적 성격과 그 주도세력의 정치·이념적 지향'을 놓고 쟁점이 되는 것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이 문제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왔으니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청중들은 이들의 문제접근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역사인식의 제고에 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추위의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

1992년 10월 31일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 백추위
위원장 이이화

갑오농민전쟁기 執綱所의 역사적 성격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1. 머리말
2. 집강소의 설치와 조직
3. 집강소 조직의 역사적 위치
4. 맺음말

1. 머리말

갑오농민전쟁은 한국근대 민족운동사에서 한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조선후기 이래 군·현 단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농민항쟁의 흐름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종합하여 봉건모순의 척결을 촉구하는 한편, 개항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모순을 해결하려 한 반제·반봉건 운동이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빈농을 주축으로 한 민중은 조선 후기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력기구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 군현에 설치한 집강소가 바로 그것이다.

집강소는 농민전쟁 과정에서 최고의 조직 형태였다. 이를 통해 농민군은 스스로 지방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폐정개혁을 실천해 갔다. 따라서 집강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갑오농민전쟁 전체의 성격과 농민군의 변혁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집강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김의환이 「전주화약과 집강소」에서 대체적 성격을 정리한 이후 瀨古邦子가 『東學史』와 『甲午略歷』을 주로 이용하여 집강소의 설치과정과 조직체계 및 활동에 관해 개괄하였다. 그 후 『梧下記聞』이 소개되면서 신용하교수는 「집강소의 설치」와 「집강소의 활동」이라는 연작논문을 통해 집강소의 성격을 구명하였다. 그 밖에 지역 사해 연구로 홍성찬교수의 부여 대방면 집강소 연구와 신영우교수의 경북 예천의 보수집강소 연구가 있으며, 최근 정창렬교수의 집강소 설치 과정에 대한 분석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집강소가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주로 조직적 측면에

추진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 있는 집강소의 조직적 성격에 관해 기존의 연구가 도달한 성과와 쟁점을 2장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3장에서는 조선 후기 민중이 봉건체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역사적 발전의 산물로서 집강소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맥락에서 집강소 조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2. 집강소의 설치와 조직

1) 집강소 설치의 시기, 범위 및 단위

설치시기와 발전단계

집강소의 설치는 일차적으로 전주화약을 계기로 주어졌다. 고종은 황토현·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이 패퇴하고 전주성이 함락되자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는 한편, 김학진을 새로 전라관찰사로 임명하여 화해의 임무를 주어 농민전쟁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전봉준 지휘 하의 농민군은 처음에는 전주성 점령 후 바로 서울로 진격할 예정이었으나 청일 양국 군대의 침략 소식을 접하고 정부군과의 휴전을 모색하였다. 양쪽의 이러한 사정으로 1894년 5월 8일의 전주화약이 성립되었다. 전주화약은 정부가 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농민군은 전주성을 정부군에게 양도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화약 이후 전주성에서 해산한 농민군은 각 군으로 돌아가서 무장을 풀지 않고 폐정개혁을 위한 권력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화약 이후 제2차 농민전쟁의 봉기까지 집강소는 여러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고 폐정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갔다. 신용하 교수는 집강소의 발전 단계를 다섯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① 제1차 농민전쟁 시기(준비기): 농민군이 점령지에 집강을 임명한 단계, ② 1894년 5월 8일부터 6월초순까지(설치기): 해산한 농민군이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한 단계, ③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확립기 혹은 공인기): 전라감사 김학진이 군 집강소를 공인한 단계, ④ 7월부터 9월 12일까지(전성기): 전라도 53개 군현의 통치권력을 장악한 단계, ⑤ 9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농민전쟁 수행기와 해체기): 제2차 농민전쟁 봉기와 패배로 인한 해체의 시기. 정창렬 교수는 집강소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① 1894년 5월 19일-6월 15일경(집강소 제1기): 설치기, ② 6월 15일-7월 5일(집강소 2기): 남원대회 이후 김학진과 전봉준의 교섭기, ③ 7월 6일-10월(집강소 3기): 집강소의 공식적 인정과 집강소 질서 공식화 시기. 양자의 시기 구분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기왕에 성립된 집강소 체제에 대한 김학진의 공인 시기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이 각 군에서 무력을 기초로 실제로 음정을 장악해 가자 김학진은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 등을 전라감영에 초청하여 ‘官民相和之策’을 서로 의논한 결과, 전봉준 측의 제의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군에 설치된 집강소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여 합법화시켜 준 것이 집강소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설치범위와 단위

집강소는 기본적으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남접 지도 아래에 있던 전라도 53개 전 군현에 설치되었다. 물론 설치된 시기는 각 군현의 군사적 역학관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에 의하면 설치지역은 전라도 지역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6월 21일 일본군의 경북궁점령 소식이 전해진 6월 하순 이후에는 충청도 지방, 경남 서부지방 경북 북부지방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집강소 설치의 단위는 조선시대의 기초 통치단위인 군현을 단위로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원래 전주화약 이후 봉건정부의 입장에서 전쟁의 수습방안으로 구상되어 농민군에게 제시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양반지배층을 정점으로 한 구래의 향촌질서나 신분 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는 위에서 종래 농촌사회에서 관행되어 왔던 농민들의 呈訴의 기능을 집강과 집강소의 기능을 통하여 이를 강화하고 현실화해 간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기존의 감영과 수령이 지배하는 행정체제 아래 사실상 종속되는 집강제도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학진이 애초에 설치를 허용한 집강소는 종래의 ‘面·里 執綱’ 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이 각 군에 귀환하여 바로 설치한 것은 정부가 허용한 面·里집강이 아니라 郡집강이었다. 농민군은 전주화약에서 무장을 해제할 것을 정부측에 약속했으나 사실은 무장을 풀지 않고 각 군에 둔踞하면서 제1차 농민전쟁 때의 농민군의 군 단위의 집강 임명의 예에 따라 전라도의 대부분의 지역에 직접 폐정개혁에 착수할 기관으로 집강소를 설치한 것이다. 물론 군 단위 아래 면 단위의 집강소 설치도 확인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단위는 군현이었다. 당시 지방행정의 핵심단위는 군현이었으므로, 농민군으로서는 군집강을 임명해야 전주화약 때 정부가 약속한 폐정개혁 실시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하위의 면리 집강의 임명으로써는 이 약속된 감시의 목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설치과정

전라도 각 군에 설치된 집강소는 철저한 무장점령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봉건압제와 질곡에서 자신을 지킬 궁극적이고 유일한 수단이 무장 썬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권력의 기초가 무력에 있다는 점을 과거 민란 등을 통하여 뼈저리게 인식하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권력을 장악해 갔다. 종래 봉건 정부는 민란이나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의 폐정개혁 요구에 대하여 기만적으로 그 실시를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폐정개혁을 요구한 농민들을 체포·투옥하거나 살해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농민들은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농민군 내에서는 전주성 양도에 대한 일부의 반성과 후회도 있었다.

집강소 설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농민군 무력이 정부군에 비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일 양국 군대의 침략으로 전주에 파견되었던 총제영 병사 500명이 5월 13일 수도 방위를 위해 전주에서 서울로 철병하였고 5월 18일에는 순변사 이원회가, 그리고 5월 19일에는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에서 철수하여 전주에는 강화영병 200명의 병력만이 남았다. 그리하여 병력의 우위는 농민군에 있었다. 농민군은 군사력을 기초

로 하여 전라도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는데 지방의 관리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처음에는 집강소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남원, 운봉, 순창, 나주 등에서는 실제로 농민군 무력을 파견하여 집강소 설치에 성공하였다.

2) 집강소의 조직과 권력 문제

조직체계

우선 집강소의 내부 조직체계를 보면 집강소 전성기의 조직은 정치조직 내지 군사 조직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집강소는 총책임자인 집강 아래 집행기관, 의결기관, 호위군은 갖추고 있었다.

먼저 집강소의 집행기관은 『甲午略歷』에 의하면 최고 책임자 집강 아래 書記, 省察, 執事, 童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집강은 집강소의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집행기관의 책임자였다. 서기는 집강소의 농민통치의 문서를 작성·정리하며 집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찰은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있어서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고 순찰과 감찰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집사는 집강소의 행정과 공사를 관리하는 행정요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몽은 주로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각 집강소와 기관 사이의 전령과 연락을 담당하고 집강소 간부의 호위를 담당하며, 때로는 성찰의 보조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집강소의 집행기관은 행정조직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다음 집강소의 의결기관은 『동학사』에 “의사원 약간인을 두었으며”라는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집강소의 공식기구와는 달리 농민군 전체 집회인 도회 혹은 민회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였음이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충청도 대방면과 경북 예천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 사례 연구에 의하면 농민군 지도부가 중요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도회에 참여한 농민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6월 15일경에 남원에서 수만명이 모인 단합대회가 열렸는데 이것도 도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적이었다.

집강소 호위군은 각 군 집강소의 농민군의 상시적 무력이었다. 동원된 농민 전체가 유사시에는 모두 무력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이와 별도로 상시적 무력기구가 있었던 것이다. 농민군의 군사력은 기존의 지방정부의 지배를 부인하고 농민의 권력기구를 실현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집강소가 기본적으로 전쟁의 와중에서 성립된 자생적 권력기구였던 만큼 군사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집강소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바로 이 호위군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권력행사의 유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현 단위 집강소의 설치에 기초한 농민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리하여 집강소는 일시에 일의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개별 구체적인 향촌에서의 농민군과 반농민군 세력간의 서로 대립하는 군사적인 역관계에 따라 설치경위·시기·방법 및 집강소의 운영방식·주체 및 기능 등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

된다. 집강소가 전라도 53개 郡縣에서 통치권을 장악한 정도에 따라 집강소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갑오농민전쟁과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쫓겨 郡縣의 守令들이 도망하고 任地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官長이 없어서 守令 空官 중의 郡縣에 농민집강소가 설치된 경우이다. 이러한 군현에서는 집강소는 명실공히 모든 통치를 담당하였다(남원). 둘째, 각 郡縣의 官長은 任地에 남아 있으나 이것은 단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집강소가 통치권을 장악해서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郡縣에서는 종래의 관청과 吏胥들은 집강소에 종속되어 幫助기관으로 전화하고 집강의 지휘를 받으면서 집강소의 농민통치에 보조적 기능을 하였다(전주). 셋째, 郡縣의 官長이 지방의 통치를 행하고 농민집강소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감시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군현에서는 지방통치권은 수령과 집강소에 이원화되어 官과 농민 사이에 협력의 체제가 이루어진 경우이다(순창). 이것들 중 가장 지배적인 유형은 ‘官長은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집강이 수령의 일을 하는’ 두번째 유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농민군은 실질적으로 집강소를 통해 지방권력 완전히 장악하여 농민통치를 실시했다.

조직의 성격

이와 같이 집강소는 조직에 있어서 권력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농민군에 의한 직접 통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집강소가 도달한 지방권력의 성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는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분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황현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매읍에 나아가 집을 설치하고 接主 한 사람을 임명하여 太守일을 행하게 했는데 그를 집강이라 불렀다.”

“그 친당을 세워 집강으로 만들어 守令의 일을 행하였다.”

“또 오늘날 어떠한 읍의 邑事를 막론하고 (동학)道人이 이를 주재하고 관장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이러한 서술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전봉준이 전라도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집강소를 통해 그것을 행사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강소의 집강은 太守=守令=邑宰의 역할을 하였으며 집강이 邑宰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라관찰사 김학진은 도내의 각군에 감결을 보낼 때에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집강소에 보내는 전봉준의 통문을 빌어 그에 의지해서 겨우 보내기도 할 만큼 기존의 통치권력은 형해화되어 있었다.

정치권력의 물질적 토대의 핵심은 군대와 조세인데 집강소는 이를 확보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먼저 농민군은 정부와의 화약의 조건을 넘어서 무력을 기초로 하여 군단위의 집강소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집강소 설치 후에도 집강소 호위군이라는 상비군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집강소 호위군은 권력 장악과 유지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였다. 또한 집강소 농민군은 조세징수권도 행사하여 그들의 삭감된 세율에

따라 전세 군포제도 일부 징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인집강소에는 「요역절목」과 「전세도록」 각 1책이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세수납행정에 쓰인 참고자료였다고 생각된다. 또 관군이 동학의 10죄를 논하는 방문에 그 셋째의 죄로 ‘國課를 미완한 것’을 든 것은 집강소가 田稅·軍布稅를 삭감하여 징수했거나 그 이전에 징수된 것을 상납하지 않고 처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집강소는 정부기관의 문서처리의 방식을 채택하여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관군측이 제2차 농민전쟁 진압당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집강소의 행정이 상당히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시인할 정도였다.

한 가지 덧붙여 들 것은 군 단위의 집강소가 정치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각 군 집강소간의 통일성에 있어서는 다소 느슨한 형태였다고 하는 점이다. 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전라우도, 전라좌도, 광주지역 등에서 휘하에 군 집강소를 어느정도 통제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각 영역 간에는 의견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통일된 사령부 아래 농민군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기초를 둔 군용할거 식의 지배가 기본적인 양식이었다. 이는 봉건적 지역성의 극복이라는 면에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3. 집강소 조직의 역사적 위치

갑오농민전쟁기에 출현한 민중의 자생적 권력기구로서의 집강소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구조라는 객관적 조건과 민중의 변혁역량의 성장이라는 주체적 조건을 기초로 성립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집강소의 출현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집강소가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구명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에는 양반사족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향촌사회 지배구조가 해체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지배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촌사회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노골적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수령권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 지배질서는 봉건 국가의 대민 직접 지배의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족지배체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향촌사회 지배질서가 수립되지 않는 한 향촌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와 민중 간의 첨예한 대립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피지배계급인 민중이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향촌사회에서의 지배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입술 민란 단계까지는 아직 이러한 계급구조의 변동을 담아낼 새로운 향촌사회의 권력기구나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대체할 만한 계급적 역량의 성장과 계급의식의 발전이 전제 조건이 된다.

민중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반봉건의식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조선후기 생산력의 발전과 봉건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과정에서 획득해 낸 여러가지 조직형태들을 통해 표출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빈농을 중심으로 한 민중은 생산력 발전을 토대로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들 자신의 노동조직인 두레와 농악,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면서 조선후기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입술민란의 단계에 이르면 지방권력에 대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임술민란 단계에서의 농민들이 도달한 조직적 역량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향촌사회의 양반지배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여 뿌리채 흔들어 놓았지만 아직 자신들의 대체 권력기구를 수립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집강소는 이러한 조선후기 민중의 조직 경험의 토대 위에 선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민군이 집강소 수립에 조직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여러 조직형태들을 검토함으로써 민중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을 살펴보고 집강소의 역사적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갑오농민전쟁시기에 출현한 집강소는 몇가지 차원의 조직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봉기조직이었다. 농민전쟁은 향촌사회에서 고립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농민대중의 집단적 봉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집강소는 무엇보다도 농민봉기군의 집단적 동원에 기초한 조직이었다. 둘째로 그것은 정치조직이었다. 농민군은 전라도 각 군현을 점령하고 지방통치권을 장악하여 집강소를 통하여 농민통치를 행하였다. 셋째로 그것은 군사조직이었다. 농민봉기군은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보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중앙권력을 타도하기 위하여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집강소는 군사적 대오를 편성한 군사조직이었다. 넷째로 그것은 지역 간 연대조직이었다. 각 군현에 설치된 집강소는 각각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전봉준, 김개남 등의 최고 지도자의 일정한 지휘 아래 지역적 연대들 속에 있었고 제2차 농민전쟁 때에는 집강소의 연합으로 농민군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조직적 성격을 가진 집강소가 그 조직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조직형태에는 조선후기에 성격이 변화된 鄉會, 동학조직, 그리고 두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鄉會

먼저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이 된 농민대중이 어떠한 조직적 기반으로 동원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대중동원의 기구로 작용하고 있었던 향회에서 찾을 수 있다.

향회는 원래 조선봉건사회의 향촌사회 지배기구였다. 그것은 조선중기 이래 지방민 통제를 위한 지배층 중심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향회는 18세기 중엽부터 조세 수취에 관여하게 되면서 성격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양반 중심이었던 기존의 향회는 성격이 변화하여 일부 평민들까지도 참가하는 향회가 되었다. 확대된 향회는 처음에는 단순히 여론 참작의 정도에서 시작되었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수령이 읍정의 대부분을 향회의 논의나 동의 하에 수행할 만큼 그 역할이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향회는 요호들을 비롯한 민이 모이고 그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집약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 상호간에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무대가 되었다. 그래서 향회는 관에 수동적인 기구에서 민의 주체적이고 자치적인 기구로 변모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19세기 중엽까지 향회는 중세의 부패한 지배층에 의해 성장을 저지당하는 요호층을 비롯한 민이 저항운동을 벌이는 발판이 되었다. 민은 향회를 통해 通文, 邑

訴, 議送이나 等狀의 방법으로 저항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것들이 이때 민중에게 통용 내지 용인되었던 최고의 운동형태였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체제 안에서 행해지는 비판이었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의 요구였다. 말하자면 입술민란 이전까지는 피지배층의 권익을 지키고 권리신장을 위해 합법적으로 벌이는 운동의 방편이 향회였다. 향회를 통한 합법적인 투쟁이 통하지 않을 때 민중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바로 민란이었다.

1862년 민란으로 지목된 향회는 이제 관에서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체적으로 소집하는 향회로 탈바꿈하였다. 농민들은 관(양반) 주도의 향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의 모임을 만들어 나갔다. 바로 民會, 里會, 都會라고 불리었던 민주도의 향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주도의 향회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봉기의 주도자들은 사전에 면임·동임과 같은 말단 지배기구 앞으로 回文·通文을 돌리고, 면임·동임들은 자신의 관장하에 있는 향촌 공동체조직내에서 농민을 선발하고 榜書를 장시에 내걸어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펼쳤으며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응징과 罰錢으로 대처하였다. 이처럼 봉기 대중의 동원에 향회와 향촌의 공동체적 조직이 이용되어 공동체적 강제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농민들이 봉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봉기한 후에 향회는 일종의 자치기구로 기능했다. 관권을 배척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뒤의 공백을 민 스스로의 주체적 의사에 따라 메꾸어 나갔으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향회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치의 경험은 갑오농민전쟁의 집강소의 통치의 한 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862년 민란기에 농민의 저항조직으로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낸 향회는 한 읍 내지 면의 농민 대중을 동원하고 동원된 대중을 의식화시키며 투쟁의지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으며, 합법적 방법에 의한 투쟁이 좌절될 때에는 향회 그 자체가 봉기의 단위가 되어 기존의 권력기구에 타격을 가하고 스스로 자치기구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갑오농민전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고부민란에 있어서도 민란군의 동원이나 조직에 역할을 맡은 매개체는 동장·집강·향임 등의 향촌자치기구였으며 그것의 공론의 장은 향회였다고 볼 수 있다. 전봉준, 최경신 등의 민란 지도부와 대중 사이에는 동장·집강 등의 향촌자치기구가 매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부의 향촌자치기구가 민란 중민과 지도자층의 매개기구로 등장함으로써 고부민란은 일시적인 폭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농민 대중의 동원에 손쉬운 이러한 향회의 조직적 경험이 갑오농민전쟁에서 활용되었을 것임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報恩聚會 당시 농민들은 향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民會'를 운위하는 등 민권의식을 신장시키고 있었다. 농민들은 외국의 예를 들어 민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집강소 시기에 농민군은 각 읍 단위와 대도소 단위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향회의 집회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5일

경에 수만명의 참여 하에 열린 남원 대회는 그 대표적인 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술민란기의 향회는 대중 동원에는 유리했으나 권력기구가 되기에는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였다. 우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위 향촌사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웠다. 1862년 민란의 경우 민란 발생지역이 무려 70여개 읍에 이르고 있지만, 각 민란은 서로 조직적 연계를 맺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고부민란의 경우에도 고부의 향촌자치기구가 민란 증민과 지도자들의 매개기구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지역적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둘째로 향회는 양반 중심의 기구에서는 탈각하였다고는 하나 새로이 주도권을 잡은 층이 요호부민층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계급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요호부민들이 주도한 향회는 민란으로 발전했을 때에는 더이상 요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고 민이 직접 선봉에 나서게 되었다. 이 점은 초기 주도층에 의해 제시되었던 슬로건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동력이었던 소·빈농들의 이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항쟁과정에서 소·빈농들의 인식이 보다 철저해지는 반면에 향회의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요호층이 향회에서 이탈함에 따라 항쟁의 조직적 기반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항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세째, 향회는 향촌사회의 자치기구의 책임자인 향임에 의해 주도되기는 하였지만 향회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조직체가 아니라 일시적 집회였다.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중동원력은 무엇보다도 컸지만, 조직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요컨대 향회는 대중 동원의 차원에서 집강소 권력기구의 대중적 기반은 확보하는데 활용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역성, 계급성, 일시적 성격 등으로 강고한 권력기구를 구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민란이 대부분 국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은 이러한 조직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오농민전쟁에서는 민란을 뛰어 넘는 한 차원 높은 조직적 자원을 동원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군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자원을 동학조직에서 구하고 있었다.

2) 동학조직

갑오농민전쟁은 동학조직과 결합함으로써 민란의 일시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전국 규모의 농민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동학의 조직은 중앙교단 하의 통일적 편제와 단위 조직 하의 중간간부 조직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학의 포·접 제도는 중앙교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단위 조직을 묶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조직형태였다. 이러한 전국적 조직망이 농민전쟁과 결합함으로써 갑오농민전쟁을 종래의 민란의 국지성을 지양한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학의 또 다른 차원의 조직형태는 각 접이 중간간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학조직은 접주·접사 아래 校長·教授·都執·執綱·大正·中正 등의 6임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교

세의 발전과 교단조직의 팽창에 따르는 업무 분담의 제도였다. 이러한 동학의 중간간부 조직은 애초에는 포교조직이었지만 비상시에는 조직의 임무를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농민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기포조직으로 형태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상시적 중간간부조직은 농민군 지도부와 대중을 지속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오농민전쟁에서는 민란에서의 항쟁의 일시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차원의 동학조직의 원리는 갑오농민전쟁의 봉기와 집강소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먼저 포·접 제도는 전국적인 규모의 농민전쟁의 전제였다. 교부민란이 지역성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차원으로 폐정개혁의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변혁역량의 동원의 매개체도 보다 확대되고 개방적인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지역의 교립·분성성을 완전히 뛰어넘어 변혁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매개체로 동학의 조직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제1차 농민전쟁은 茂長에서 南接都所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장봉기와 농민전쟁의 총사령부였다. 동학조직에 기초한 농민군의 총사령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조선후기이 끊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란은 지역적 한계를 넘고 차원이 다른 농민전쟁으로 비약할 수 있었다. 전봉준은 남접도소를 설치하고 약 20일 동안에 전라도 약 10여개 군을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조직화하여 농민전쟁을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라도 10여개 군의 농민군 약 4천명을 봉기군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동학조직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갑오농민전쟁이 동학의 종교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조직의 통일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위 납북접 간의 노선상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그것이다. 애초에 동학조직은 종교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봉기 조직이 될 수 없었고 그것이 봉기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사회개혁을 위한 세력이 결집되어야 했다. 서장육과 전봉준을 비롯한 납접 계열의 동학접주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최시형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북접 접주들은 동학을 어디까지나 종교로서 한계지우고 포교를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납접이 제1차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통치에 들어가자, 북접에서는 납접에 대한 적대감을 분명히 표시했다. 그리하여 6월 21일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청일 전쟁 이후 전봉준 등의 납접은 일본침략군과 대결하여 서울 진격을 목표로 집결하였지만 북접파의 반대로 시일이 천연되어 기회를 놓치고, 일본군과 관군이 납북접을 가리지 않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자 9월에 가서야 겨우 북접도 일본군과의 대결을 위하여 납접과 더불어 농민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요컨대 갑오농민전쟁에서 동학조직이 활용됨으로써 그 포·접 제도가 전쟁을 전국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각 접의 중간간부조직은 지도부와 농민 대중을 결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동학조직 그 자체가 애초에 종교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통일적 조직에 한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농민전쟁의 지도자들은 동학조직의 논리에 함몰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 두레

농민군의 집강소는 무엇보다도 무력에 기초한 군사조직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집강소가 지방권력의 장악과 유지에 있어서 농민군의 군사력과 집강소 호위군에 의존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집강소권력의 군사적 토대가 된 조직적 자원은 무엇보다도 조선후기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두레조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레는 애초에는 공동노동을 위한 작업공동체였지만 그것은 유사시에는 군사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레의 조직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레의 성원은 자연촌락의 약 16세-55세까지의 성인 남자로서만 조직되었다. 두레의 성원은 바로 당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軍丁과 정확히 일치했다. 둘째로 두레에서는 지휘자와 역원이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두레성원과 완전히 호흡을 같이하고 있었다. 두레의 체계적 조직은 농민운동이나 농민전쟁의 경우에 필요하면 즉각 1개 단위의 전투 소대가 될 수 있는 내부의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두레에서는 대오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노동했으며 규율과 능률을 매우 중시하였다. 두레의 이러한 훈련과 규율은 농민전쟁의 조직적 활동에서 즉각 원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넷째로 두레의 農旗·領旗 등의 깃발과 농악의 농악기는 바로 軍物이 되어 농민전쟁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었다. 다섯째로 두레 성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노동·공동식사·공동휴식·공동오락을 통한 굳은 동지적 연대와 단결은 농민운동, 농민전쟁에서 그 주체세력과 추진세력의 단위로서 전화될 수 있는 충분한 소인을 갖춘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두레는 동계 내에 포섭되어 있다가 점차 독자적이 노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나갔다. 농민들은 두레를 통하여 조선후기에 향촌사회에서의 일방적인 양반지배의 외곽에서 자체조직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두레조직은 농민군의 동리 단위에서의 군사력 형성에 기초가 되고 있었다. 또한 두레는 그 조직의 구성에서 자·소작농을 중심으로 하고 지주층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樵軍, 남사당패 등도 농민군의 하부단위를 이루는 조직이었다.

두레가 농민운동,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편성과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찌기 조선후기에도 고위 양반관료들이 이를 매우 위협시하여 두레를 탄압하거나 農旗와 농악기를 몰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갑오농민전쟁 때에도 양반관료들은 두레와 농악이 농민봉기에 활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금압하였다. 1892년 11월 동학도들의 삼례취회, 1893년 3월의 보은취회 등 갑오농민전쟁의 전주곡에 해당하는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호남일대에서는 1893년 1-5월 사이에 농민들의 봉기의 기미가 보이면 이를 적발하도록 훈령하면서 농민봉기와 두레의 농악을 연결시켜 농악의 금단을 긴급히 지시했던 것이다.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두레가 활용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두레에서 사용하던 깃발과 두레의 농악에서 사용하던 농악기가 농민군의 군물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갑오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의 봉기와 집강소의 농민군의

조직적 대오에는 두레가 기초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강소 통치에서는 실질적인 신분 평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집강소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힘의 원천은 농민군의 대중집회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농민군의 주축을 이루는 생산주체들의 일상적인 단결된 조직훈련과 민주적 회의방식에서 기원에 축적된 힘인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의 지방권력기구인 집강소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바로 두레와 마을회의 등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농민들의 자주적 집회 방식 및 조직방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갑오농민전쟁의 조직의 최고형태인 집강소는 조선후기에 전개된 농민들의 여러가지 조직형태들을 자원으로 하면서도 이것들을 극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권력기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먼저 향회는 일방적으로 관의 지배하에 있던 농민대중을 동원하고 의식화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저항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리하여 민란을 거치면서 그것은 농민항쟁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봉기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향회는 그 자체로서는 향촌사회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항쟁의 일시성을 극복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일거에 전국적 규모의 농민전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동학조직이었다. 민란에 동학조직이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 차원 높은 농민전쟁으로 비약하고 봉기의 지도부는 동학의 중간간부조직을 활용하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권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작업공동체로서의 두레가 농민군이 군사적 대오를 원활하게 갖추고 집강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집강소는 조선후기 민중의 여러가지 조직형태를 수렴하면서 주체적으로 창출한 자생적 권력기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갑오농민전쟁 시기에 출현한 집강소는 조선후기 민중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의 결과이며, 그것은 한국사에서 근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여기서는 집강소의 역사적 성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집강소의 설치과정이 갖는 의의를 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주화약의 결과이지만, 단순히 화해의 산물이 아니라 농민군의 역량, 특히 군사력을 기초로 한 민중의 전취물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로 역사의 무대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봉건시대의 피치자의 위치에서 역사의 전면에 주체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사에 있어서 거대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2) 집강소 조직은 단순히 지배에 대한 저항이나 봉기의 조직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서 통치조직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농민군은 조선정부군과의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집강소 통치를 실시하였다. 집강소는 농민군이 창출한 자생적 권력기구로서 그것은 조선봉건체제의 향촌사회 지배질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었다. 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 향촌에서의 양반신분의 지배와 수탈을 통해 관철되는 봉건적 지배를 부정하고 스스로 지방통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강소는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과 조세권을 토대로 비록 향촌사회에 한정되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접 통치를 행사했다. 향촌사회에서의 권력 행사라는 한계는 중앙권력이 장악된다면 미구에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3) 집강소 조직과 활동을 근대사회로의 이행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집강소 조직은 각 군현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봉건적 국지성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다름아닌 근대 민족의 형성과정이었다. 나아가 집강소에 동원된 농민군이 봉건적인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근대사회로의 지평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강소는 봉건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회신분제와 봉건적 토지소유를 뿌리채 부정하고 양반신분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지배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근대적 질서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4)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결국 일본군과 조선정부군, 그리고 보수유생층의 3자 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은 일본군의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군과 계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한 투쟁은 후진국 일반에서 제기되는 계국주의 침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대 민족의식을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침략세력에 의한 농민군 토벌과 집강소의 해체는 한국 근대민족운동의 시련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집강소의 조직적 경험이 일정한 역사적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농민군 총사령부와 군 단위의 집강소의 통일성 확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봉건적 지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권력장악과 직접 통치의 경험을 축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민중의 주체역량의 성장을 토대로 하여 창출된 민중의 자생적 권력기구로서 집강소가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왜소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전쟁 主導세력의 정치, 이념적 구상

曹 敏(고려대 평화연구소)

1. 농민전쟁의 主導세력과 主體세력
 _ 참가계층을 중심으로 _
2. 정치적 구상
3. 이념적 구상
4. '동학'과 '갑오' 및 '농민전쟁'과 '농민혁명'
 _ 수동적 혁명을 중심으로 _

1. '농민전쟁'의 주도세력과 주체세력

일반적으로 농민전쟁을 수행한 참가층에 대해서는 이미 황현, 이설 등 봉건 유생의 기록에도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황현은 농민전쟁이 기본적으로 동학과 난민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도 봉기에 참가한 대부분은 난민이라고 보았다.¹⁾ 이로부터 동학농민전쟁의 참가층을 대개 경

제적으로는 소농, 빈농, 소상, 유랑민 등으로, 사회신분적으로는 상민, 노비, 백정, 일부승려 등으로 파악해왔다.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에 대한 연구로서는 한우근교수에 의한 몰락양반, 殘班層說이 처음으로 제시된 바 있다.²⁾ 그 후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 연구에서 반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빈농하층민을 부각시킨 입장도 나타났다.³⁾ 그런데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신용하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교수는 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를 신분에 있어서는 <良人層>과 <奴婢를 중심으로 한 賤民層>이었고, 사회계급에 있어서는 <小作農을 중심으로 한 貧農層>으로 규정하여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을 <양인신분층과 노비·천민신분층의 소작농 그리고 빈농층>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혁주체세력의 검출과 관련될 수 있는 시각이지만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에만 관심을 기울인 일원적 접근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첫째, 제 2차 농민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외무대신의 자리에 있었던 김윤식은 농민군을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東徒는 모두 常賤, 私奴, 官屬의 下輩, 班種의 敗家浪者들이다.”⁵⁾ 라고 하여 단순히 한 계층으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격적인 농민전쟁이 시작되는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동학도의 보은집회에 모여들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고에서 선무사 어윤중은 이들을 당대의 다양한 기층민중들과 불평불만에 가득찬 세력들로 파악하였다.⁶⁾ 이처럼 농민전쟁에 참가한 계층은 신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광범한 세력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황현, 「梧下記聞」, 「甲午平匪策」

2) 한우근, 「동학사상의 본질」 (문교부연구보고서 24호, 1968), 「동학의 리더쉽」 (『백산학보』 8호, 1970)

3) 조경달, 「동학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조선사연구회 논문집』 19, 1982.

4)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과 사회신분」, 『한국사연구』 50.51합집호, 1985.

5) 「동학도에 관한 건」 (『駐韓日本公使官記錄(一)』 갑오 10월 16일, (국사편찬위원회, 1988), 215쪽)

6) 宣撫使再次狀啓, 『東學亂記錄』(上)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는 농민전쟁의 참가층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 일단 主導層과 主體勢力으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자.⁷⁾ 물론 농민군의 구성성분은 전쟁의 과정과 수행양태에 따라 어느정도 변화하게 된다.

주도층이라고 할 경우엔 당시 농민군지도자로 부상하는 혁신적 지식인층을 지칭한다. 이들은 대개 몰락양반으로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이면서도 이를 거부했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살았다. 농토를 지닌 경우가 극히 드물며, 훈장·의원·풍수 등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때로는 동학의 포교를 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도층의 존재는 1860년대의 임술민란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말해준다. 이들은 남접의 변혁주도파나 북접의 동학교단파에 공통된 현상이다.

전봉준은 낮은 신분출신으로 경제적으로는 빈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개남은 농민지도부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했으며,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은 역시 견실한 농민으로서 결코 빈농의 지위에 놓여 있지는 않았다. 특히 장흥접주였던 이방언은 지주출신으로 짐작된다. 그는 갑오년 12월 장흥과 강진지역에서 농민군과 일대 격전을 벌인 유생층의 의병장 金漢燮과 鼓山 任憲晦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문인이기도 하다.⁸⁾ 그리고 부안의 金洛喆도 지주였음이 확인되었다.⁹⁾

요호와 부민들이 주도세력을 이룬 사례도 있다. 이들은 고부민란의 성격을 밝혀주는 沙鉢通文에 기명된 各里執綱들로서 초기에는 민란의 주도세력의 역할을 맡았으나 대부분은 관측의 회유에 따라 해산하고 말았다. 이후 사발통문에 서명한 접주 20명 중에 본격적인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봉준을 포함하여 7명에 불과했다.¹⁰⁾ 이처럼 士族출신이나 부호 지주출신이 봉기를 주도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농민봉기의 수행양태가 진전되어가자 이들은 곧 탈락하게 된다.

전봉준 자신이 공초에서 “동학의 무리는 적고 冤民이 많았다”라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이 주체세력은 분명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빈민계층이었으며 이들이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하층 빈민이 자연적이며 무매개적으로 운동의 동력으로 결집되기는 어렵다. 바로 여기에서 이들을 이끌 수

7) 몰락양반과 반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빈농하층민과는 지도와 동맹의 관계로 규정한 시각도 있다. 조경달, 앞의 논문.

8) 『오하기문』 갑오 12월조.

9) 신용하, 앞의 논문에서 분석한 동학대접주의 출신사회신분 참고.

10)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1), 『역사비평』 1989년 겨울호.

있는 주도세력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주체세력인 농민군대중과 구별되는, 봉기를 준비하고 조직화하는 주도세력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도세력은 농민군대중인 주체세력과 사회신분에서나 계급적입장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되는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입장을 통해 지식계층인 농민지도층의 사상과 그들의 정치이념에 대한 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적 구상

위텔문서의 기록에 따르면 남접세력의 일단으로 추정되는 정치세력이 권력기구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¹¹⁾ 이들은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사전조직을 면밀히 구성하고 또한 무력에 의한 정권탈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鷄龍山開國受命’이라 전제하고 의정부를 조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領相 吳泰源 이하 좌의정, 우의정, 도원수, 대장군, 그리고 각 판서가 임명되어 있었다.¹²⁾ 左相 金炳一(茂長居)과 戶曹判書 鄭星五(威平居)는 거주지가 밝혀져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이름(모두 가명으로 추정됨)만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보관하는 동시에 당시 금구와 원평 집회 그리고 보은집회에 참가하여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주도면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

11) 위텔(Mgr. Gustav Mutel)문서 1983, No. 51. (한국교회사연구소):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는 1893년 5월임; 이이화, 「동학혁명운동의 남접두령들」, <역사문제연구소회보> 제 2호, 1986.

12) 左相: 金炳一, 右相: 吳啓源, 都元帥: 吳斗源, 刑曹判書: 鄭洛元, 工曹判書: 姜一元, 吏曹判書: 鄭一有, 戶曹判書: 鄭星五, 禮曹判書: 李弘緣.

13) 거사를 준비하는 이들의 활동은 크게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무기와 자금조달을 위한 준비로: 무주산성에서 철환괘짝을 훔치고 담양추월산성에서 화약을 훔치며, 강화도의 무기를 탈취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자금도 조달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한 활동으로: 불감사의 승려 仁源, 백양사의 승려 愚葉, 선운사의 승려 水演을 금구.원평의 집회에 참가케하고 또 다른 승려 宜葉을 보은집회에 참가케하는 등 동학도의 정치집회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뒤뉠문서는 비록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에서 의정부라는 전근대적 형태의 조직을 기반으로 하지만 組閣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봉건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受權의도와 준비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농민전쟁 당시 황해도 지역에서 일본군측이 입수한 都錄에는 농민군이 지방정부를 구성하고자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¹⁴ 이 도록에 따르면 농민군은 황해감사로 임종현, 강령현감에는 성재식, 안악군수로는 이용선 등을 내정하여 역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낮은 수준에서나마 권력기구에 대한 구상을 엿보게 하는 사례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는 노력은 또한 당시 민중의 정치의식의 수준이 어느정도였던가 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예컨대 보은집회를 주도한 농민군지도부는 자신들의 집회를 정부측에 '民會'로 인식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어윤중의 보고를 인용해 보자.

그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들의 이 모임에는 어떠한 병기도 지니지 않았으니 이것은 民會입니다. 일찌기 듣건데 다른 나라에도 또한 민회가 있어 조정의 政令이 民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會議하여 議政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례입니다. 어찌 匪類라 하여 다스리려 합니까.¹⁵

이러한 정치의식의 일단은 서구근대정치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특히 당대 일본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서양제국들 사이에 일련의 조약체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일본과 서양세력의 침탈에 대한 위구감이 팽배해져가는 상황이 노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외세배척의 논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동학교단지도부에 의한 복합상소운동을 계기로

14) 「甲午海營匪擾顛末」, 『동학란기록』(하), 736쪽.

15) 「선무사재차장계」(『동학란기록』(상), 123쪽), 그리고 금구·원평취당과 관련하여 고종의 上下議院 즉 民會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만 하다. (『日省錄』 고종 30년 4월 5일자 참조)

일어난 외국공사관에 대한 벽보사건들(벽보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일본과 서양세력의 존재에 대한 위구감의 표현이었다. 외세에 대한 부정과 외세에 대한 이해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서양과 일본의 정치·사회적 사정에 대한 이해는 통치층 내부의 인식범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군지도부의 사전준비와 모의과정에서 어느정도 검토될 수 있었던 문제로 추정된다.

전봉준 자신이 집강소 기간 동안 정치적 개혁의 차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체제 또는 권력형태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당시 일본의 한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통해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국사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말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¹⁶⁾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정치체제의 개혁에 대한 농민지도부의 구상은 지방정권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봉건정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체제 또는 권력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봉준이 중앙정치세력과의 연대 내지는 제휴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던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민씨정권이 구축된 다음 정권을 장악한 개화파는 곧 반농민군적 친일정권으로 돌아섰으며, 대원군세력이 곧 패퇴됨으로써 농민군지도부의 구상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농민군지도부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은 큰 의의가 있다. 요컨대 이들이 구상한 '합의법'이란 근대적 代議政治制度의 차원으로까지 곧장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을 반봉건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구체화하려 했다는 사실은 정치체제의 구상에 대한 근대적 비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내 주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로

16) <東京朝日新聞> 1985년 3월 6일, 2월 20일 경성, 아오야마발 (『갑오농민전쟁자료발굴: 「전봉준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9, 재인용)

미루어 농민군지도부는 합의제적인 정치체제구상을 통해 지배계층 내의 다른 정치적 분파와 함께 제후를 통한 이른바 '느슨한 (loose) 연립정부'의 형태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이념적 구상

여기서 이념적 구상이란 앞의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향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봉건사회의 신분모순의 타파라는 문제에는 이견의 차이가 크지는 않는 반면, 전근대적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인 토지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향이 어떠한가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집강소의 폐정개혁안 가운데 마지막 조항인 '平均分作'의 문제는 사실 조선 사회의 발전의 과정과 봉건사회 해체기의 궁극적 지향점을 해명하는데 관건이 되는 문제라 하겠다. 평균분작은 문맥상으로 양면적 해석을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토지소유에 초점을 두어 소유관계를 균등히 하자는 이른바 '均田論'적인 논리로 해석될 수 있고, 이와달리 토지소유의 기본적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耕作權을 보장한다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찌기 정창렬교수는 폐정개혁안 12조는 지주전호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농민전쟁의 지향이 농민적 토지소유의 발전으로 명백하게 定向됨을 주장했다.¹⁷⁾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바, 평균분작의 조항이 "말 그대로 토지의 경작을 평균되게 한다는 경작평균의 원칙이었다"고 하면서 김학진 곧 개화파의 상대적 양보조향에 비해 이 조항이 농민군측 즉 전봉준의 상대적 양보로 짐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작평균의 원칙은 농민전쟁 당시 김학진을 보좌했던 金星圭의 토지제도개혁안(1904년에 확립)을 주목하여 평균분작에 내포된 토지제도개혁안은, 곧 경작평균의 원칙은 김학진의 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봉준과 농민군들이 지주전호제를 반대하고 토지소유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 타협안으로서 전봉준이 김

17) 정창렬, 「한말변혁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 I (창작과 비평사, 1982)

학진측의 '경작평균'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문제에서 양측이 일단 합의를 이룩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군과 개화파 사이에 연합과 협력·동맹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역사적으로 실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⁸⁾

박찬승교수는 앞의 정교수의 초기입론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농민전쟁의 경제적 지향점은 봉건제도의 근간이 되는 봉건적 토지소유와 지주·전호제를 철폐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¹⁹⁾

신용하교수는 『동학사』의 초고본(1924년)과 간행본(1940년)의 집강소 폐정 개혁 요구를 비교하면서, 초고본과 간행본에 공통되는 조항인 “토지는 평균으로 分作할 사”와 그리고 초고본의 “농군의 두레법을 장려할 사”의 2개 조항이 핵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집강소의 토지개혁정책은 지주제도를 폐지하고, 井田制의 원리를 참조한 土地平均分作제도와 이를 공동노동으로 경작하는 ‘두레農場制度’로 해석하는 독특한 논리를 제시했다.²⁰⁾

평균분작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개 전봉준의 토지개혁사상이 茶山의 토지소유론 및 토지제도개혁론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다산학의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崔益翰은 다산의 혁신적인 개혁사상을 담은 『經世遺表』 비본(별본)이 “갑오년에 기병한 全祿豆, 金介南 일파의 수중에 들어가 그들이 이용”했던 사실을 당시 <康津邑誌>의 「명승草衣傳」을 통해 밝히면서 「田論」, 「湯論」, 「原牧」 등을 비본의 내용으로 추정했다.²¹⁾ 이는 전봉준의 사상이 다산사상과 맥락이 닿아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농민항쟁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주적 토지소유의 타파와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이었다. 이는 다산의 사회경제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閭田論」와 「井田論」에 함축된 지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혁신적 토지개혁사상을 제시한 「여전론」

18)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延大, 박사학위논문, 1991. 6)

19) 박찬승,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Ⅲ(창작과 비평사, 1985)

20) 신용하, 「조선왕조말. 일제하 농민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태」, 『한국사시민강좌』 제 6집, 1990, 일조각)

21) 崔益翰, 『실학파와 정다산』, 1955. 평양.

은 지주적 토지소유제의 거부와 농민적 '均産'의 원리를 함축하고있다. 이에 비해 「정전론」은 토지를 매개로 한 생산과 소유관계의 원리적, 이념적 형태로서 '井田'의 원리적 복구를 통해 토지경병에 따른 田政의 문란과 조세문제(국가재원의 확보책)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여전론」의 이상에 비해 「정전론」은 사적지주제의 현실을 어느정도 긍정적인 논리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양자는 공히 사적, 개별적토지소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세유표』의 전론의 구성내용 대략 세 차원으로 짚어본다면, ^{22) 2차 부분에서는} 사적지주제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정전제의 원리적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타협안이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은 기술, 영농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治田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오히려 茶山의 田論은 초기 젊은 시절에 구상했던 「여전론」적인 이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사적지주제의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론과 토지제도개혁론에 대한 다산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유제적, 국가적 소유의 확립이었다고 하겠다. 다산은 이를 '王土思想'으로 집약하고 있다. 23) 왕토사상은 궁극적으로 土地公有化를 지향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24) 그는 지주적 토지소유권을 부정하고 '農者得田'의 원칙에 입각한 직접생산자(佃夫)의 토지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다산의 사회경제사상과 전봉준의 토지개혁사상과의 관련성을 전제한다면 폐정개혁안의 평균분작의 이념은 사적지주제의 현실에 대해 양보 또는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평균분작에 대해 정창렬교수는 “「정다산비결」 = 「경세유표」의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전제개혁안은 현실의 지주전호관계를 그냥 용인한 채, 토지의 경작만을 경작 능력에 따라 평균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경작 평균」의 안을 전봉준이 수용했다고”고 주장했다. 25) 경작권이란 현실의 지주전호

22) 王土思想이 직접 드러난 곳은 다음과 같다. 『與猶堂全書』, 1, 卷9 그리고 『經世遺表』, 卷 6 地官修制 田制考6 邦田議 및 卷5 田制1 「井田論」1 (『국역경세유표』 II, 13쪽, 14쪽, 111-112쪽, 155쪽)

23) 강만길, 「다산의 토지소유관」, 『다산의 정치경제사상』 (창작과 비평사 1990)

제가 용인된 상태라면 그것은 사실 소작권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적 현실이 비록 지주제가 강화되는 길을 갔다고 하더라도 전봉준의 토지개혁의 이념이 '소작권의 안정적 확보'와 타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평균분작은 土地公有制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개혁논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토지소유의 이념의 전제아래 時作 = 경작인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의지로 이해된다. 안정적인 농민경제의 확립은 농민의 절실한 이상이다. 이는 물론 사적지주제가 용인되는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평균분작은 국가적 토지소유의 이념을 전제한 '농민의 자립적 경영권'의 확보를 지향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가적, 공유제적 토지소유권이 과연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과 부합되는가 하는 문제는 일단 별개의 차원이다.

한편 유영익교수는 토지소유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평균분작'의 조항에 대해 이 조항 자체가 실제로는 1940년대에 오지영에 의해 조작적으로 창안된 문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다시말해 『동학사』는 1930년대 후반에 풍미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아래 본래 없었던 것을 저자가 창안한 것으로, 『동학사』는 하나의 "역사소설"임을 단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조작된 조항으로 인해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동학란"의 성격을 혁명적인 것으로 과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봉건"이나 평등주의적 강령을 입증할 만한 일차사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그는 동학란을 유교적 전통내에서 일어난 "의거"로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시각은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과정에 대한 검토와 지금까지의 연구사적 성과를 전혀 도외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구의 경향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 하겠다.

24) 정창렬, 앞의 논문. 다산의 전제개혁론에 대한 해석은 박찬승교수의 논문(「정약용의 정전제론 고찰」, 『역사학보』, 110, 1986)의 입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註에서 언급하고 있다.

25) Young Ick Lew, "The Conservative Chararter of the 1894 Tong Hak Peasant Uprising: A Reappraisal with on Chon Pong-jun's Background and Motiva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7, 1990.

3. '동학'과 '갑오' 및 '농민전쟁'과 '농민혁명'

1894년의 일대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 크게 두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동학과의 관련성의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민봉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²⁶⁾

1894년의 농민전쟁이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전통과 민중운동의 연면한 흐름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먼저 동학의 사상과 교문조직이 1894년의 농민전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금까지 동학과 농민전쟁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파악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동학의 '事人如天'은 중세봉건적 인간관인 階梯的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성리학적 인간범주 내에서 상민과 특히 천민계층은 '人'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노비, 천민 등은 이른바 士農工商의 職役체계에서조차 배제된 '物'에 불과했다.²⁷⁾ 바로 동학에서 상호 평등한 인간관계를 천명한 사실을 통해 봉건적 의식의 밑바닥을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유의 태동을 만날 수 있다. 민중계층은 스스로 인간해방의 논리를 외래사상의 영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각했다. 이러한 사상체계가 민중의 의식일반에 관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해방의 의지와 힘이 실천적 행동으로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이 전통적 농민봉기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상당히 다른 점을 말해준다.

신분적 모순은 전근대사회의 가장 일상적인 질곡이다. 신분적 질곡을 타파하려는 의지는 농민전쟁과 같은 혁명적 상황에서는 계급모순에 비해 즉자적이고 더욱 폭발적으로 표출된다. 동학--종교적 성격이 아닌 혁신적 사회사상으로서--이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을 구성하는 노비, 천민 등의 하층계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응집력으로 작용했던 역할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동학에 함축된 사유체계야말로 전단계의 농민봉기와 민중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전쟁과의 관계

26) 동학농민전쟁 용어 및 성격 토론을 정리한 「1894년농민봉기, 어떻게 부를 것인가」(『역사비평』 1990년 가을) 참조.

27) 노비, 천민 등의 죽음은 '物故'로 표현된다.

속에서 동학을 일종의 종교적 맥락에서 전제한 ‘외피설’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1894년의 일대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협애화시키는 ‘갑오’라는 干支식 수식어는 탈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농민전쟁’인가 또는 ‘(농민)혁명’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두루 알다시피 농민전쟁론은 16세기 독일의 봉건말기의 다양한 농민봉기·반란을 지칭한 용어로서 엥겔스로부터 연원한다. 그는 1850년 반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독일민족의 “혁명적 전통”을 밝히기 위해서 「신라인신문 *Neue Rheinische Zeitung*」의 제 5호와 6호에 게재했던 글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당시 독일 사학계의 농민반란과 토마스 뮌저의 연구에 권위자인 W. 칙머만의 「대농민 전쟁사개설 *Allgemeine Geschicht der grossen Bauernkrieges*」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간행본의 책이름을 「독일농민전쟁 *Der deutsch bauernkrieg*」으로 붙였던 것이다.²⁸⁾ 그는 농민봉기와 반란의 연구에 대한 칙머만의 권위에 의탁했다. 그러나 칙머만은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서술적 용어로 사용했지 개념적 용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엥겔스는 자신의 논문에서는 반란, 봉기, 혁명을 엄밀한 개념규정 없이 착종적으로 혼용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는 간행본의 제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후 전근대사회의 농민봉기·반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엥겔스의 연구논문의 간행본의 서명인 ‘(독일)농민전쟁’을 개념적 용어로 사용하게된 것도 역시 엥겔스의 권위에 의탁한 것이라 하겠다.

부르조아 반봉건투쟁의 맥락에서 ‘농민전쟁’을 개념적인 용어로 차용하게 된 것과 이와 함께 ‘외피론’의 단초를 열게된 계기는 오길보 등의 북한 학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²⁹⁾ 이후 이러한 입장이 우회적인 길을 통해 우리 학계에 소개되면서 1894년 농민봉기의 명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그런데 ‘농민전쟁’으로 접근하는 시각과는 달리 ‘혁명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결코 차단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혁명론을 이해하는 시각

28) 엥겔스, 「독일농민전쟁」 제 2판 저자 서문 참조. (『독일혁명사 2부작』 허교진 옮김, 소나무, 1988)

29) 토론: 오길보, 「갑오 농민 전쟁과 동학에 대하여」; 김사역, 「1894년(갑오) 농민 전쟁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종식, 「갑오 농민 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하여」 (뒤어쓰기는 원제에 따름). (『역사과학』 제 5호, 1959)

은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 또는 계급적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1894년의 농민봉기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지배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전취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전쟁은 패배했지만 '혁명적' 성격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계급관계의 해체는 유보되었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통치기구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는 동학사상에서 이념적으로 이미 전근대적 인간관계를 타파하고 있었다면, 신분해방의 실질적 과정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³⁰⁾

이런 점에서 전통적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이 패배로 귀결되고 말았지만 기존의 지배계급이 더 이상 헤게모니를 관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배계급내의 한 새로운 분파가 정치적 블록을 재형성하면서 개량적 조치를 취하는 국면을 '수동적 혁명 Passive Revolution'³¹⁾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1894년의 일대사건을 '농민전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함께 '수동적 혁명'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30) 프랑스혁명은 구체제 Ancien Regime 즉 정치, 사회체제의 타파로부터 시작되면서 계급적 이해관계 보다는 신분해방이 먼저 구가된다. 계급적 관계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혁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31) '수동적 혁명'은 A Gramsci 혁명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이는 그람시가 이태리의 실지회복운동 Risorgimento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지배계급의 개량적 조치라 할 수 있는 '혁명없는 혁명 "revolution" without "revolution"'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부르조아사회로의 이행기에 전형적인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에서 적용가능성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어로 생각된다. (『The Concept of Passive Revolution』 참조.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 and tran.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1971, pp. 106-114)

